

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

□ 목적

-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(R&D)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지정하여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를 활성화

□ 추진근거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아목
- 기획재정부계약예규 (계약예규)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
-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(행정예고중, 2020-07-21 ~ 2020-08-10)

□ 주요내용

-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,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”으로 지정
-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 계약을 연계하는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

□ 신청자격

-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 - ①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
 -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완료(성공) 기술*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

*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(60점 이상) 통보를 받은 기술

□ 신청 대상 제품

-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·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
-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(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)을 개선·개발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·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

□ 평가 절차

주요내용	담당기관	세부내용
제품등록	신청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(물품목록번호 확인) *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」 제 13조, 제22조 및 제23조 참고
↓		
신청	신청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에 이메일 제출
↓		
서류검토	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,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
↓		
조달적합성 검토	조달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청기업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 및 신청제품의 제조물품 등록 여부 확인
↓		
현장평가	평가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청제품의 제조현장에서 제품과 성능 확인, 연구개발 기술의 적용 여부, 제품생산을 위한 사업화 기반 등을 평가
↓		
서류/발표평가	평가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청제품의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혁신성을 평가*하며, 필요시 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*종합평가점수(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,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) 70점 이상인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인정
↓		
지정예정공고 및 조달청 통보	국토교통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 공고 ·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

□ 평가기준

구분	심사기준
현장평가	<p>1. 제품의 확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<p>2. 연구개발기술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 <p>3.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<p>4. 제품의 성능 확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<p>5. 기타 확인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
서류평가	<p>1.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(40)</p> <p>가.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·제품인지 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내외국인 생활편의 향상, 국민 생명·안전 보호,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<p>나. 공공구매 필요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기술 적용제품·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*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<p>다. 현안의 시급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, 국민적 수요, 공론화 정도 *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<p>라.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기술 적용제품·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국민생활 향상, 사회 안전 해결,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*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<p>2. 시장성(20)</p> <p>가. 기대 시장규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신기술 적용 제품·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○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신기술 적용 제품·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<p>나. 타 산업 파급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구매 확장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(국내/국외) ○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·발전 가능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*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<p>3. 혁신성(40)</p> <p>가. 기술·제품의 신규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,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,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* 품질, 사용의 편의성, 가격프리미엄 등 <p>나. 기술·제품의 탁월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·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<p>다.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○ 신기술 적용제품·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